

●산업통상부공고 제2026-82호

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‘행정절차법’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02월 09일

산업통상부장관

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현행 「에너지법」 제16조의3에 따른 에너지이용권과 「도시가스사업법」 제20조의3에 따른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 간 연계 체계를 유지하여 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별표 9의2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규정 삭제

나. 산업통상자원부령 제603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단서 규정 삭제

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－ 일반우편 : (30118)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가스산업과

－ 팩스 : 044-203-4762

4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부 홈페이지(<http://www.motir.go.kr>) 정보-국회·법령-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산업통상부 가스산업과(전화 044-203-5236, 팩스 044-203-4762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